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즉시연금보험 관련 항소심에서 최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 해당 판결에서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은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음. 또한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계속하여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임
 - 즉시연금보험은 연금만을 지급받는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지, 연금을 언제까지 지급받는지, 나중에 지급받는 목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임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보험기간 중에 매월 생존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임¹⁾
-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들에서 쟁점이 된 것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임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금액(연금월액)의 산출 방법을 단순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금월액의 계산

내용

-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에서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계약순보험료”임
- ② 연금계약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함)이 매월 생존연금 지급을 위한 기본 재원이 됨
- ③ 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나중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따로 공제해두고,
- ④ 잔여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함

1) 이와 달리 상속종신형은 만기 또는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임. 즉 상속종신형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상속만기형은 매월 연금은 더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임

- 위의 ③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만기 시에 연금계약순보험료가 아닌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임
 - 차감했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상당액까지 포함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연금계약순보험료에서 시작한 적립금에 매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더해서 만기 시 적립금의 수준이 기납입보험료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위와 같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일부 금액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이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회사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 됨
 - 생존연금의 산출 방식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에는 “생존연금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된다”는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임
 -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생존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²⁾
 - 이에 대하여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³⁾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산출방법서의 약관 편입 여부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은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음
- 약관에서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분명하게 두고 있는 점,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생존연금의 금액을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는 점,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초서류인 점, 보험회사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산식을 보험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산출방법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대해서, 항소심은 보험회사가 반드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보험회사가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산출방법서라고 보았음
 -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상 산출식에 따라 곧바로 계산되는 구조인데,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만 생존연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산출방법서상 산출식을 단순화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보험회사가 반드시 그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 나아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생존연금으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적립액 공제에 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8가합572096, 2019가합585402 판결

3)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2021나2031635, 2031642 판결

한 보험회사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이미 차감한 점, 해당 보험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공시이율 적용이익 외에 배당이 가능한 운용이익이 있을 수 없는데 보험회사는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연금월액 산정과 관련한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출방법서상 복잡한 연금월액 계산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산출방법서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그 연금월액의 변동가능성'이며(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의 연금월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나 해당 산출식의 근거 등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 것임
- 보험회사가 즉시연금보험의 유형별로 생존연금 예시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가입설계서를 교부하면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들은 그와 같은 즉시연금보험 유형별 생존연금 예시액을 비롯하여 만기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보험차익의 비과세 혜택, 만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즉시연금보험 관련 분쟁들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연금월액이 지나치게 낮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지나치게 낮아졌기 때문이지 적립액 공제 여부는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을 가정하였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설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금월액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음

- 산출방법서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할 생존연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만약 설명의무 위반으로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음
- 이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납입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미지급 생존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임

○ 이처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1심 및 2심 법원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의 소송 추이를 계속하여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